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직 대통령의 예외적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2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52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윤종오 · 정춘생 · 강득구 · 김준혁 · 전종덕 · 정혜경

한창민 · 임미애 · 김준형 · 김재원 · 조계원 · 황운하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9.

다. 회 부 일 : 2025. 4. 10.

※ 의안번호 : 9672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정춘생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 이해민 · 서왕진

용혜인 · 김준형 · 차규근 · 한정애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20.

다. 회 부 일 : 2025. 5. 21.

※ 의안번호 : 1055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안]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려는 공통된 취지이나,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윤중오의원안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나, 정춘생의원안은 ‘탄핵 소추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까지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윤중오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u><단서 신설></u> 1. ~ 6.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4조(경호대상) ① ---- -----. <u>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호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u> 2. <u>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u>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윤중오의원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선,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경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전 퇴임 또는 재직 중 사망 시에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경호대상자 요청 시 5년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¹⁾²⁾

한편, 「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비 등 각종 예우를 규정³⁾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한 예우를 모두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⁴⁾

1) 「대통령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2) 단,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경호가 가능함.

「대통령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3) 「전직대통령법」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4) 「전직대통령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고 인정되거나(탄핵),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란·외환)에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국가에 대한 공헌에 따른 예우적 성격을 갖는 것과 동시에 재임 중 국가 기밀을 취급한 인물로부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 및 범죄자나 특정 집단의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 안전 확보 차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종오의원안**과 같이 「전직대통령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즉,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하여 해당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경호 주체가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까지 배제하려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673호)」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표-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윤종오의원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생략)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도 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	

셋째, 윤종오의원안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이미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였으나 현재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함.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고 판시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에 따른 소급효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수의 국가 기밀을 취급한 점을 고려할 때,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탄핵 결정을 통해 퇴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호 및 경비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016

5)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전원재판부 결정)

6)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주변 공업용 커터칼 난동사건(2022년) 및 방호관 차량돌진 사건(2023년), 박근혜 前 대통령 소주병 투척사건(2022년) 등 실제 위협사례가 존재하였음.